

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년 8월 21일 부천시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9년 8월 21일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
 - 제154회 부천시의회(임사회)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(2009년 9월 4일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)

가. 제안이유

- 「청소년기본법」이 전부개정(법률 제7162호, 2004. 2. 9. 공포 · 2005. 2. 10. 시행)됨에 따라 조례 및 위원회 명칭을 부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일원화하고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, 띄어쓰기 준수 및 복잡한 문장 체계를 정리하여 시민이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개정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조례명칭을 「부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」로 변경함.(안 조례제명)
- 위원회 명칭을 부천시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함.(안 제1조)
-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신설함.(안 제2조제4항, 신설)
-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.(안 제11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<p>○ 기존 조례상 위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나요?</p> <p>○ 당연직 부위원장은 공무원과 시민 각 1명으로 선출하게 되어 있어 공무원의 범위가 불명확한데?</p> <p>○ 그간 상위법령이 지속적으로 개정되었음에도 조례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. 동조례는 물론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임. 소관 조례의 실효성 확보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.</p> <p>○ 동조례와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?</p>	<p>○ 그러함.</p> <p>○ 교육장, 경찰서장 등 유관기관 공무원을 모두 포함한 의미임.</p> <p>○ 보다 관심을 갖고 조례를 정비해 나가겠음.</p> <p>○ 심도있게 검토하겠음 (이상 체육청소년과장)</p>

4. 토론요지

가. 반대토론 : 없음

나. 찬성토론 : 없음

5. 심사결과 : 『원안의결』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”를 “부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청소년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”을 “「청소년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부천시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”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시민 각 1명을 선출한다.

③ 위원은 부천교육청교육장 및 부천남부경찰서장·부천중부경찰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그 외 위원은 관계행정기관공무원, 청소년단체, 언론계, 학계, 종교계, 문화예술계 및 사회단체 등의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통괄”을 “총괄”로 하고, “심의 조정”을 “심의·조정”으로 하며, 제2항 중 “위원회가”를 “위원장이”로 하고, “노동부 지방사무소등”을 “지방노동관서 등”으로 하며, 제4항 중 “도지방

청소년위원회”를 각각 “도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”로 하고, “건의
할”을 “건의를 할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제3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
고, “학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”를 “실무경험이 풍
부하고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”로 한다.

① 제4조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
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.

제6조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중 “요하는”을
“필요로 하는”으로 하고,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청소
년업무 담당”을 “청소년업무담당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”를 “예
산의 범위에서 「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관하여 필요한 사항”을 “필요한 사항”으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청소년기본법과 동법시행령”을 “「청소년기본법」과
같은 법 시행령”으로 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
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455호
의결 년월일	2009. 9. 8. (제154회)

제출년월일 : 2009. 8. 21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「청소년기본법」이 전부개정(법률 제7162호, 2004. 2. 9. 공포·2005. 2. 10. 시행)됨에 따라 조례 및 위원회 명칭을 부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일원화하고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, 띄어쓰기 준수 및 복잡한 문장 체계를 정리하여 시민이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개정 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조례명칭을 「부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」로 변경함.(안 조례제명)
- 나. 위원회 명칭을 부천시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함.(안 제1조)
- 다.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신설함.(안

제2조제4항, 신설)

라.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.(안 제11조)

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”를 “부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청소년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”을 “「청소년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부천시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”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시민 각 1명을 선출한다.

③ 위원은 부천교육청교육장 및 부천남부경찰서장·부천중부경찰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그 외 위원은 관계행정기관공무원, 청소년단체, 언론계, 학계, 종교계, 문화예술계 및 사회단체 등의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통괄”을 “총괄”로 하고, “심의 조정”을 “심의·조정”으로 하며, 제2항 중 “위원회가”를 “위원장이”로 하고, “노동부 지방사무소등”을 “지방노동관서 등”으로 하며, 제4항 중 “도지방 청소년위원회”를 각각 “도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”로 하고, “건의할”을 “건의를 할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제3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“학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”를 “실무경험이 풍부하고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”로 한다.

① 제4조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.

제6조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중 “요하는”을 “필요로 하는”으로 하고,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청소년업무 담당”을 “청소년업무담당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”를 “예산의 범위에서 「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관하여 필요한 사항”을 “필요한 사항”으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청소년기본법과 동법시행령”을 “「청소년기본법」과

같은 법 시행령”으로 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</p>	<p>부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</p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청소년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청소년기본법</u>」 제11조에 따라 부천시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----- -----.</p>
<p>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회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민간인 각 1인을 선출한다.</p> <p>③ 위원은 시교육장 및 경찰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그 외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, 청소년단체, 언론계, 학계, 종교계, 문화예술계 및 사회단체의 존경받은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</p>	<p>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시민 각 1명을 선출한다.</p> <p>③ 위원은 부천교육청교육장 및 부천남부경찰서장·부천중부경찰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그 외 위원은 관계행정기관공무원, 청소년단체, 언론계, 학계, 종교계, 문화예술계 및 사회단체 등의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p>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운영) ① 위원회는 지방청소년 육성시책을 통괄하며, 지역내 청소년유관기관 단체의 청소년 육성에 관한 계획을 심의 조정한다.</p> <p>② 위원회가 청소년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내 청소년유관기관(교육청, 경찰서, 노동부 지방사무소등) 및 단체의 계획과 예산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위원회는 도지방청소년위원회에서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필요할 경우 도지방청소년위원회에 청소년의 건전육성 등에 관한 건의할 수 있다</p>	<p>제3조(운영) ① ----- -----<u>총괄</u>----- ----- -----<u>심의·조정</u>-----.</p> <p>② <u>위원장이</u>----- ----- -----<u>지방노동관서</u> <u>등</u>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<u>도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 -----<u>도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</u>----- -----<u>건의를 할</u>-----.</p>
<p>제5조(실무위원회 구성)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.</p> <p>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</p>	<p>제5조(실무위원회 구성) ① 제4조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.</p> <p>③ -----<u>해당</u>----- ----- -----<u>실무경험이 풍부하고 식견을 갖춘 사람</u> <u>중에서</u>----- -----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실무위원회의 기능) 실무위원회는 다음 <u>각호</u>의 사항에 대하여 조정 또는 심의한다.</p> <p>1.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미리 검토를 <u>요하는</u> 사항</p> <p>2. · 3. (생략)</p> <p>4. <u>기타</u>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과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</p>	<p>제6조(실무위원회의 기능) ----- -----<u>각 호</u>----- ----- 1. ----- ----- <u>필요로 하는</u> ----- 2. · 3. (현행과 같음) 4. <u>그 밖에</u>----- ----- ---</p>
<p>제7조(실무위원회의 간사) ①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<u>1인</u>을 둔다.</p> <p>② 간사는 <u>청소년업무 담당</u>으로 한다.</p>	<p>제7조(실무위원회의 간사) ① --- ----- -----<u>1명</u>----- ② ----- <u>청소년업무담당</u> ----- -----</p>
<p>제8조(수당 등)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<u>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 조례</u>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수당 등) ----- ----- ----- <u>예산의 범위에서 「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</u> ----- ----- -----</p>
<p>제9조(운영세칙)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<u>관하여 필요한 사항</u>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.</p>	<p>제9조(운영세칙) ----- ----- <u>필요한 사항</u>----- -----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<u>청소년기본법과 동법시행령</u>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<신 설></p>	<p>제10조(준용) ----- ----- 「<u>청소년기본법</u> <u>과 같은 법 시행령</u> ----- -----.</p> <p>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<u>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